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414

발의연월일: 2023. 1. 11.

발 의 자 : 권명호·김석기·김용판

김희국 • 백종헌 • 이주환

임이자 · 정우택 · 지성호

한무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 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형벌 이외의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이에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 태료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78조제2항제1호 삭제, 제80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8조(벌칙) ① (생 략)	제78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
에 처한다.	
1.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	<u><</u> 삭 제>
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	
<u>하지 아니한 자</u>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8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80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
	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
	하지 아니한 자
<u>5.·6.</u> (생 략)	<u>6.·7.</u>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
	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